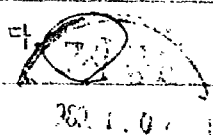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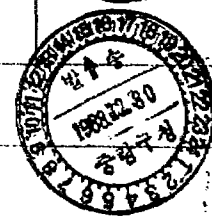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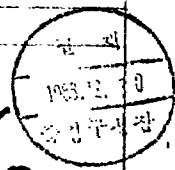


원 제 / 연

분류기호 문서번호	주 택 30411- 882 (전화: 490. 3380)	기 안 용 지	시 행 상 국 민 위 관
보 존 기 간	영구 · 준 영구. 10. 5. 3. 1.	구	청
수 신 처 보 존 기 간			
시행일자	88. 12.		
보 조 기 관	부 청 장 도 시 점 비 주 택 과 장	합 조 기	문 서 통 제
가안책임자	백한성(윤명성)		
경 유 수 신 참 조	가안 참조	발신명의	
내 부	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		
(제 1 안) 내부결재			
1. 우티구 관내 신내 동 613번지 1호외 3필지 지상에 변점과 같이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어 주택건설 촉진법 제 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코자 합니다.			
2. 승인내역			
가. 사업주체 : 주식회사 원양주택			
나. 사업위치 : 중랑구 신내동 613번지 1호외 3필지			
다. 규모 : 아파트 1층 / 동 10세대.			
라. 내 역 : 변 점			

88. 12. 30



원본은 중앙우체국과 보관을 위하여

마. 개 락 : 승인조건 별첨.)

첨 부 :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내역 1부.

(제 2 안)

수 신 (주) ~~원양개발~~ ~~박병태~~ ~~이민~~ (주) ~~원양개발~~ 나-2)

제 목 동 권

1. 귀하께서 우리구에 제출하신 중랑구 ~~신내~~ 동 613번지 1 호외
3 필지상에 민영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건설 촉진법
제 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 합니다.

2. 동 사업계획 승인은 주택건설 촉진법 제 33조의 규정에 따라
건축법 제 5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도시계획법 제 4조, 제 12조, 제 24조
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승인 또는 허가를 가름 하오나 위 관련 제법규
에 의한 우리구의 지도 감독을 받아 착공, 중간지도 및 준공 보고등을
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라며,

3. 동 사업시행에 따른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서문 교부
코져 하오니 면허세 및 지하전 공책 매입필증을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.

가. 승인개요

구분	구 모		대지면적	건 축 면적	건적용 면적	용적률	비 고
	동수	층수					
아파트	1	5	50	246.9	406.9	24.16	1/20

첨 부 : 승인조

1부 (별첨)

(제 3 안)

수 신 수신처 참조

제 목 동 권

1. 아테와 같이 민영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 신청이 있어 주택

건설 촉진법 제 33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제 5조의 건축허가 및 도시

계획법 제 4조, 제 12조, 제 24조, 제 25조에 의한 결정승인 또는 허가를

가름 하는 사업승인을 하였기 통보 하오니 업무수행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
2. 승인내역

가. 사업주체 : 주식회사 *인당 주택 박 박치위인*

(*사지 방내를 4호-2*)

나. 건설위치 : 중랑구 *신내* 동 613번지 7호외 3필지

다. 건설내용 : (제 2안 가항 이거시행)

수신처 : 서울시교육감, 한국전력주식회사, 한국전기통신공사 서울지사장,

동대문소방서장.

(제 4 안)

수 신 서울특별시장

참 조 주택기획국장

제 목 민영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처리

1. 주택30411 - 140(87. 2. 11)호와 관련입니다.

2. 별첨과 같이 *안행규*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어

주택건설 촉진법 제 33조 동 시행규칙 제 19조 제 7항의 규정에 의거

신규 사업계획 승인이 있었기 보고합니다.

가. 승인내용 : (제 2만 가 항 이기시행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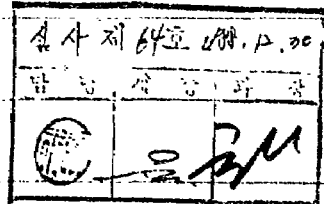
첨 부 : 사업계획 승인결과 보고서 1부.

승인조건 1부.

(제 5 안)

수 신 : 서울특별시 공보실장

제 목 : 관보 (시보) 게재 의뢰



1. 주택건설 촉진법 제 33조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 사업계획

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 32조 5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고자 하오니 관보

(시보) 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 부 : 1. 민영주택 사업계획 승인내역 1부.

2. 민영주택 사업계획 고시안 1부.

고 시 안

서울특별시 제 호

조례 제 22호 82 제 2항 의거 서울특별시

서울특별시

제

호

주택건설촉진법 제 33조 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 동

613 번지 7 호외 3 필지 지상에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

별첨 시행령 제 32조 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988 . 12 .

서울특별시

1. 사업명 : 민영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

2. 사업주체 : 주식회사 *원영* *백* *뱅크* *에* *인*

3. 사업시행 위치 및 면적 규모

가. 위 치 : 중랑구 *신내* 동 613번지 7호외 3 필지

나. 택지면적 : *2467.04* [㎡]

다. 규 모 : *아파트* *1층* *1동* *5세대*.

4. 사업기간 : 88.12 - 89.12.

(제 6 안)

수 신 수신처 참조

제 목 민영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

1. 우리구에 제출된 중랑구 *신내* 동 613번지 7호외 3필지

민영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

촉진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법 제 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지역

및 도시계획법 제 4조, 제 12조, 제 24조,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
승인 또는 허가를 개용하되 기허 승부된 설계도서액 의거 관련 제법규
및 규정에 따라 기초 및 중간 검사는 물론 사업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
할 것이며,

2. 사업승인 내역 및 승인조건등을 검토 하여 관련 법령등에
위배됨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.

첨 부 : 1. 민영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내역 1부.

2. 공 고 안 1부.

3. 승 인 조 건 1부.



수 신 처 : 도시정비과, 건축과, 공원녹지과, 토목과, 수도공사와, 환경과,

동사무소.

민영주택사업 계획 승인 내역

1. 사업주체: (주) 원광주택 박병기 외 2인
2. 사업위치: 중랑구 신내동 613번지 7호의 3필지
3. 사업량: 이세대, 5호, 1동 50세대
4. 사업비: 1,436,344,960 원
5. 호당규모및사업비: 별첨
6. 적원:
 - (1) 국민주택자금: 천원
 - (2) 금융자금: 천원
 - (3) 입주자부담금: 천원
 - (4) 사업주채자금: 1,436,344,960 원
 - (5) 주택은행민영자금: 천원
 - (6) 기타자금: 천원
7. 사업기간: 착공: 1988. 12
준공: 1988. 12
8. 복리시설 및 부대시설: 별첨
9. 조 건: 별첨

서울특별시 제 호

주택건설촉진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 동 613번지 7호외 3필지상에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 32조 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~~198~~ . ~~12~~ .

서울특별시 장

1. 사업명 : 간암지구 민영주택건설사업
2. 사업주체 : 롯데건설(주) 박영희 개인
3. 사업실행지 및 위치면적 규모
 - 가. 위치 : 중랑구 신내 동 613번지 7호외 3필지
 - 나. 택지면적 : 2462.00㎡
 - 다. 규모 : 아파트, 1층, 5층, 50세대
4. 사업기간 : 198 . 12 . . - 19 12 . . .

